

■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표 3] <개정 2025. 10. 1.>  
우수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표시(제9조제4항 관련)

1. 지정표시



지정번호 제 호  
기후에너지환경부

2. 표시내용

- 가. 우수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표시는 도넛형의 원형으로 하고, 중앙에는 정부 상징표시(symbol mark)를 사용하며, 정부 상징표시의 윗부분에는 지정명칭인 ‘우수 환경교육 프로그램’을 적고, 아랫부분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를 적는다.
- 나. 우수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표시 아래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발급한 지정번호를 표시한다.
- 다. 우수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표시 크기는 조정할 수 있다.
- 라. 우수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표시 색상(도형 및 문자)은 정부 상징표시 색상 및 검정색으로 하고, 활자체는 고딕체를 기본으로 한다.